‘26. 10.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기 획 감 사 실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6-90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발행배경

○ **2027년 보상 및 조성공사 본격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 2027년에 잔여 토지보상과 조성공사가 동시에 본격 추진됨에 따라 보상비 310억원, 공사비 220억원 등 **약 530억원의 사업비 소요 예상**
- 대규모 사업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재원조달 필요

○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용 및 재정부담 분산**

- 세입여건의 불확실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계속사업·의무지출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가용재원의 전략적 운용 필요
- 대규모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일시에 부담하기보다 지방채를 활용하여 사업비 투입과 분양수입 발생 간 재정시차를 보완하고 연도 간 재정부담 분산

○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 전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을 추진하였으나 협약내용 및 사업추진 여건 등의 변경으로 최종 김제시 단독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 필요

○ **선투입·후회수 사업구조에 따른 지방채 활용**

- 산업단지는 보상·조성단계에서 대규모 사업비를 선투입하고 향후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재원을 회수하는 구조
- 당초 사업 재원계획에 반영된 지방채 350억원을 사업비가 집중되는 2027년에 활용하고, 산업단지 분양수입금을 상환재원으로 우선 활용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김제시 상동동 4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9년

○ 사업규모 : 882,272㎡(26.7만평)

○ 총사업비 : 1,866억원(시비 1,516, 지방채 350)

○ 개발주체 : 김제시

○ 재원계획 : 시비 1,516억원, 지방채 350억원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186,600	74,265	16,200	52,933	22,000	21,202
시　비	151,600	74,265	16,200	17,933	22,000	21,202
지 방 채	35,000	-	-	35,000	-	-

- 공종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186,600	74,265	16,200	52,933	22,000	21,202
보 상 비	112,967	68,334	13,700	30,933	-	-
공 사 비	73,633	5,931	2,500	22,000	22,000	21,202

다. 지방채 발행계획

○ 발 행 액 : 350억원

○ 한 도 액 : 545억원

○ 발행시기 : 2027년

○ 차 입 선 :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재정지원금

○ 상환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 세부내역

(단위 : 억원, %)

발행액	차입선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발행방법	소관기관
200	공공자금 관리기금	3.8	3년 거치 7년 상환	자체재원	정부자금차입	재정경제부
150	지방재정 지원금	2.5	3년 거치 7년 상환	자체재원	공공자금차입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정부자금 배정결과에 따라 차입선 및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배정액은 금융기관자금으로 조달 예정

라. 지방채 상환계획

○ 상환재원 : 산업단지 분양수입금 등

-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금의 지방채 상환재원 활용을 원칙으로 함
- 백구 일반산업단지(제2 특장차) 분양수입금을 상환재원으로 활용
-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발생 시 조기상환 추진

○ 상환목표 : 2030년까지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 예상 이자부담 : 연간 약 11.4억원(지방채 350억원 전액 발행 시)

- 당초 상환조건(3년 거치 7년 상환) 적용 시 : 약 80억원
- 2030년 전액 조기상환 시 : 약 34억원

※ 실제 이자부담은 발행조건 및 분양대금을 활용한 원금상환에 따라 변동

3. 금후계획

○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승인 통보 ---------- '26. 12.

○ 2027년 본예산 반영 ---------- '26. 12.

○ 지방채 발행 ---------- 2027년

4. 따로붙임

○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관련법령 발췌서

○ 방침결정문

붙임1 **지방채 발행 동의(안)**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김제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잔여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 본격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지방채 발행사유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확보

2. 2027년 지방채 발행규모 : 350억원

3. 융자조건

(단위 : 억원, %)

발행액	차입선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발행방법	소관기관
200	공공자금 관리기금	3.8	3년 거치 7년 상환	자체재원	정부자금차입	재정경제부
150	지방재정 지원금	2.5	3년 거치 7년 상환	자체재원	공공자금차입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정부자금 배정결과에 따라 차입선 및 발행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배정액은 금융기관자금으로 조달 예정

4. 상환재원 : 자체재원

붙임2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김제시 상동동 45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866억원(시비 1,516, 지방채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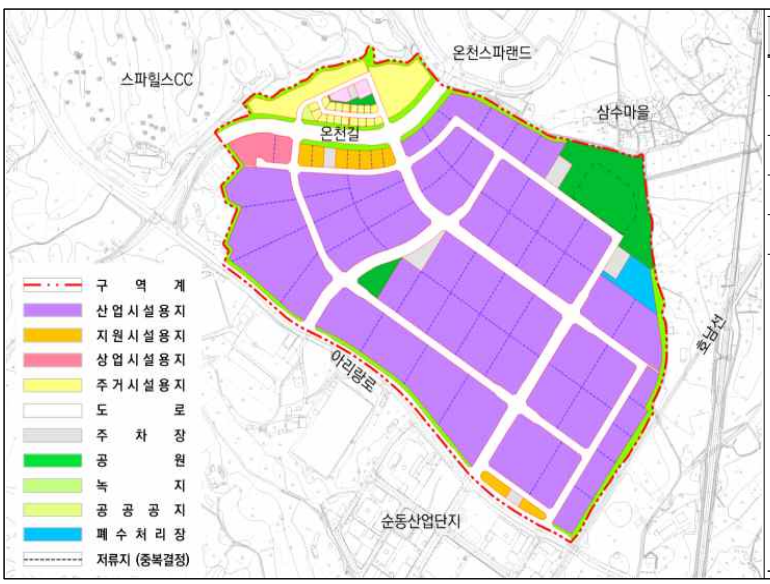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0 ~ 2029년

○ 사업규모 : 단지조성 A=882,272㎡

- 산업시설 547,120 / 주거시설 34,394 / 지원시설 14,375 / 공공시설 276,196 등

○ 사업내용 :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 식료품 등 12개 업종 유치





구분	면적(㎡)	구성비(%)
합 계	882,272	100.0
산업시설용지	547,120	62.0
주거시설용지	34,394	3.9
지원시설용지	14,375	1.6
상업시설용지	10,187	1.2
공공시설용지	276,196	31.3
도로	156,109	17.7
주차장	12,758	1.5
주민공동이용시설	2,868	0.3
공원(저류지)	49,991(16,947)	5.7(1.9)
녹지	44,437	5.0
공공공지	1,092	0.1
폐수처리장	8,941	1.0

2.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7년도 계획			2028년 이후계획
			계	시비	지방채	
계	186,600	90,465	52,933	17,933	35,000	43,202
보상비	112,967	82,034	30,933	-	30,933	-
공사비	73,633	8,431	22,000	17,933	4,067	43,202

3. 추진상황(진행률 25%)

○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지방채) ---------- '21.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행정안전부) ---------- '22. 6.

○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용역 착수 ---------- '23. 1.

○ 감정평가 및 보상 시행 ---------- '24. 2. ~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24. 5.

○ 김제시 & 전북개발공사 상호 협력 협약 ---------- '24. 8.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25. 7.

○ 공동시행 협약(안) 협의(전북개발공사) ---------- '25. 8.

○ 사업시행방안 최종보고(단독시행) ---------- '25. 12.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 조성공사 지방건설기술심의 ---------- '26. 6.

○ 단지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 '26. 8.

4. 향후계획

○ 공사착공 ---------- '26. 11.

○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분양가 산정 ---------- '29. 9.

○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 '29. 12.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붙임4 **방침결정문**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

문서번호	기획감사실-12599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6. 9. 1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감사실장	부시장	시 장	결재
황기석	최지아	이해영	이해서	김성주	
협조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27년도 김제시 지방채 발행계획(안)

김 제 시
기 획 감 사 실